

의안번호	2219890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6.7.30.
추계번호	26F346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8~2030년 3년간 총 9.9억원(연평균 3.3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9조의2)	-3.3	-3.3	-3.3	-9.9	-3.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2 (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	○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19조의2(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
 - 향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- 향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향후 아동복지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2~2024년)의 연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의 경우 최근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, 재산세 감면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3. 상세 추계내역

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,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
 -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¹⁾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지방세 면제를 적용
 - －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
 - －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
 - ※ 단,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,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, 85%의 감면율만 적용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8호

□ (감면실적) 아동복지시설 등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0년 3.4억원에서 2024년 2.6억원으로 감소

- 해당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시행 이후 적용기한 연장 외에 감면율 등 감면내용 관련 제도변화 없이 유지
-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2년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까지 다시 감소하는 등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반면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0년 2.0억원에서 2024년 2.1억원으로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모습

[표 2]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감면실적: 2020~2021년

(단위: 억원)

세목	2020	2021	2022	2023	2024	3년 평균
취득세	1.32	1.50	1.62	1.19	0.48	1.1
재산세	2.04	2.21	2.24	2.25	2.11	2.2
계	3.36	3.71	3.85	3.44	2.59	3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2) 추계방법

□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

-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각각 최근 3년의 연평균 수준인 1.1억원, 2.2억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

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, 지방세는 2027년 3.3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9.9억원(연평균 3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: 지방세, 2027~2029년
(단위: 억원)

세목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취득세	-1.1	-1.1	-1.1	-3.3	-1.1
재산세	-2.2	-2.2	-2.2	-6.6	-2.2
계	-3.3	-3.3	-3.3	-9.9	-3.3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지원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839	jwpark1209@assembly.go.kr